[서식 예] 부동산가압류신청서(손해배상금 또는 대여금)



부동산가압류신청

채 권 자 〇〇〇

ㅇㅇ시 ㅇㅇ구 ㅇㅇ길 ㅇㅇ(우편번호 ㅇㅇㅇ-ㅇㅇㅇ)

전화 ·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채 무 자 ◇◇◇

○○시 ○○구 ○○길 ○○(우편번호 ○○○-○○)

등기부상주소: ○○시 ○○구 ○○길 ○○

전화 ·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청구채권의 표시

금 71,986,849원정

손해배상금 또는 대여금 원금 48,000,000원 및 이자 금 23,986,849원 합계

가압류하여야 할 부동산의 표시

별지 제1목록 기재와 같습니다.

신 청 취 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위 청구채권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소유의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은 이를 가압류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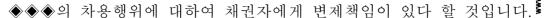
- 1. 피보전권리
 - 가. 사기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채권
 - (1) 채무자는 신청외 ◈◆◆의 처로 ○○시 ○○구 ○○길 ○○에 있는 부동산 소유자로서 자신의 집 2층 세입자의 보증금을 내주기 위하여 신청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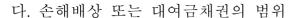
- ◈에게 금전을 차용하여 오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채권자는 신청외 ◈ 및 로부터 다른 세입자가 들어오면 돈을 변제해주겠다는 말을 믿고 채무 및 세입자에게 내줄 보증금으로 사용하도록 1998. 7. 30. 금 45,000,000원을, 같은 해 10. 24. 금 3,000,000원을 각 이자는 월 2%로 정하여 빌려 주었습니다.
- (2) 그러나 채무자는 채권자로부터 차용한 위 금전을 신청외 ◈◈◈로부터 받아 차용용도인 기존의 세입자에게 보증금으로 반환하지 않고 자신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여 사용하고 그 뒤 다른 세입자가 입주하였는데도 불구하고지금까지 채권자의 위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 (3) 그런데 채무자와 신청외 ◆◆◆는 채권자가 세상물정에 어두운 2급 지체장 애인 불구이고 행동이 부자유스러워 법적인 절차를 밟지 못할 것이라고 여기고 위 대여금채무를 변제할 의사조차 없이 채권자로부터 위와 같이 금전을 차용하고 지금까지 서로 돈을 사용한 사람은 상대방이라고 주장하며 위 채무를 변제하지 않고 있지만 채권자가 교부한 수표의 추적결과 이는 모두 채무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되었습니다.
- (4) 이에 채권자는 채무자와 그 남편인 신청외 ◈◈◈를 사기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신청외 ◈◈◈는 현재 기소중지 중에 있고 채무자는 범죄혐의 있으나 신청외 ◈◈◈의 소재불명으로 또한 기소중지되어 있으면서 신청외 ◈
 ◎★로부터 받은 돈을 자신의 계좌에 입금하고서도 오히려 변제를 거부하고 있어, 채무자와 신청외 ◈◈◈는 당초부터 변제의사 없이 채권자로부터 위금전을 차용한 것이 틀림없으므로 채권자는 채무자와 신청외 ◈◈
 ※는 사기의 불법행위자로 연대하여 채권자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것입니다.

나. 예비적으로 대여금청구채권

- (1) 만일, 채무자와 신청외 ◈◆◈가 채권자에게 변제할 의사가 있었다면 채무자는 자신 명의의 위 부동산에 세들어 있는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하기위하여 남편인 신청외 ◈◆◈에게 금전을 차용하여 오도록 하였고 신청외 ◈◆◈로부터 차용한 돈을 건네 받아 자신의 계좌로 입금까지 하였으므로, 신청외 ◈◆◈가 채권자로부터 위와 같이 금 48,000,000원을 차용한 행위는일상가사의 대리행위 범위에 포함되거나 적어도 신청외 ◈◆◈의 대리행위를 추인한 것이므로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위 대여금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할 것입니다.
- (2) 더구나 채권자는 채무자와 신청외 ◆◆◆로부터 번갈아 1999. 4. 30.까지는 이자를 변제 받았으며 고소사건의 수사결과 채권자가 교부한 자기앞수표는

채무자의 계좌에 입금되었으므로 채무자는 차용인 또는 대리인인 신불





- (1) 원금 48.000.000원
- (2) 이자 금 23.986.849원(금 48.000.000원×0.24%(월 2%는 연 24%이므로) ×760/365일(1999, 5, 1부터 2001, 6, 30까지)}(원미만은 버림)
- (3) 합계 금 71.986.849원

2. 보전의 필요성

따라서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손해배상 또는 대여금첫구의 본안소송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 종결시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리고 채무자는 다른 채산이 없으며 유일한 재산인 별지 1목록 기재의 재산조차 처분할 가능성이 많으므로 보전의 필요성이 있어 이 사건 가압류신청에 이르렀습니다.

3. 담보의 제공

그리고 담보제공은 공탁보증보험증권(■■보증보험주식회사 증권번호 제○○ 호)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 명 방 법

1. 소갑 제1호증

1. 소갑 제2호증

1. 소갑 제3호증

1. 소갑 제5호증

차용증(1998. 7. 30.자)

차용증(1998, 10, 24,자)

불기소이유통지

1. 소갑 제4호증의 1, 2 각 주민등록초본(채무자와 신청외 ◈◈◈)

가족관계증명서(채무자)

첨 부 서 류

1. 위 소명방법

각 1통

1.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2통

1. 가압류신청진술서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00. 0. 0. 위 채권자 〇〇〇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



부동산의 표시

- 1. ○○시 ○○구 ○○동 ○○ 대 103.8m²
- 2. 위 지상 벽돌조 시멘트기와지붕 2층주택
 1층 66.30㎡
 2층 44.30㎡. 끝.



가압류신청 진술서

채권자는 가압류 신청과 관련하여 다음 사실을 진술합니다. 다음의 진술과 관련하여 고

의로 누락하거나 허위로 진술한 내용이 발견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보정명령 없이 신 청이 기각되거나 가압류이의절차에서 불이익을 받을 것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20 채권자(소송대리인) (날인 또는 서명)					
※ 채무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각 채무자별로 따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 다 음 ◇					
1. 피보전권리(청구채권)와 관련하여					
가. 채무자가 신청서에 기재한 청구채권을 인정하고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 채무자 주장의 요지 :□ 기타 :					
나. 채무자의 의사를 언제, 어떠한 방법으로 확인하였습니까? (소명자료 첨부)					

- 4
- 다. 채권자가 신청서에 기재한 청구금액은 본안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는 금액으로 적정하게 산출된 것입니까? (과도한 가압류로 인해 채무자가 손해를 입으면 배상하여야 함)
 - □ 예 □ 아니오

2. 보전의 필요성과 관련하여

- 가.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하지 않으면 향후 강제집행이 불가능하거나 매우 곤란해질 사유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 나. 채권자는 신청서에 기재한 청구채권과 관련하여 공정증서 또는 제소전화해조서가 있습니까?
- 다. 채권자는 신청서에 기재한 청구채권과 관련하여 취득한 담보가 있습니까? 있다면 이 사건



라. [채무자가 (연대)보증인인 경우] 채권자는 주채무자에 대하여 어떠한 보전조치를 취하였습니까?
마. [다수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신청인 경우] 각 부동산의 가액은 얼마입니까? (소명자료 첨부)
바. [유체동산 또는 채권 가압류신청인 경우] 채무자에게는 가압류할 부동산이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 채무자의 주소지 소재 부동산등기부등본 첨부 사. ["예"로 대답한 경우] 가압류할 부동산이 있다면, 부동산이 아닌 유체동산 또는 채권 가압류 신청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이미 부동산상의 선순위 담보 등이 부동산가액을 초과함 → 부동산등기부등본 및 가액소명자료 첨부 □ 기타 사유 → 내용:
아. [유체동산가압류 신청인 경우] ① 가압류할 유체동산의 품목, 가액은? ② 채무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어떠한 보전조치를 취하였습니까? 그 결과는?
3. 본안소송과 관련하여 가. 채권자는 신청서에 기재한 청구채권과 관련하여 채무자를 상대로 본안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있습니까?

① 본안소송을 제기한 법원·사건번호·사건명은?

② 현재 진행상황 또는 소송결과는?

6	수 1 대한법률구조공단
www.klac.or.kr#	/ //
o. IX	
ŝ	
W.	
₹	

다.	["아니오"로 대답한 경우] 채권자는 본안소송을 제기할 예정입니까?
	□ 예 → 본안소송 제기 예정일 :
	□ 아니오 → 사유 :
4. ā	중복가압류와 관련하여
가.	채권자는 신청서에 기재한 청구채권(금액 불문)을 원인으로, 이 신청 외에 채무자를 상대로
	하여 가압류를 신청한 사실이 있습니까? (과거 및 현재 포함)
	□ 예 □ 아니오
나.	["예"로 대답한 경우]
	① 가압류를 신청한 법원·사건번호·사건명은?

다. [다른 가압류가 인용된 경우] 추가로 이 사건 가압류를 신청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소 명자료 첨부)

② 현재 진행상황 또는 결과(취하/각하/인용/기각 등)는? (소명자료 첨부)

제출법원	법원 가압류할 부동산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나 본안의 관할법원						
제출부수	신청서 1부 (부동산목록 5부정도 첨부) 관련 법 규 민사집행법 제276조						
불복절차 및 기간							
비 용	• 인지액: ○○○원(☞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 송달료: ○○○원(☞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등록면허세는 채권금액의 1,000분의2 방세법 제28조 제1항 라목 1)}, 지방교육세는 등록면허세액의 100분 20(지방세법 제151조 제1항 제2호) 납부 • 등기신청수수료: ○○○원(☞부동산등기신청수수료액)						
기 타 ・2003. 11. 1.부터 접수되는 가압류신청 사건부터 가압류를 신경 우에는 가압류신청 진술서를 별지로 제출해야 함.							

※ 집행절차

보험증권을 법원신청과에 제출

(보험증권앞면 사본 수통과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납부서를 함께 제출)



- ※ 가압류 사건에서 선담보제공 방식도입(부동산·자동차·채권에 한함)
 - 1. 부동산, 자동차, 임금 또는 영업자 예금을 제외한 채권에 대한 가압류 사건은 채권자가 가압류신청시에 법원의 담보제공명령 없이 보증보험회사로부터 미리 공탁보증보험증권(보증서)을 발급받아 보증서 원본을 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함
 - ★ 가처분 사건과 유체동산 가압류 사건은 제외
 - 2. 보증금액
 - ○아래의 가압류신청사건에 대한 담보기준 참고
 - 3. 가압류신청서상에 담보제공은 증권제출 허가신청 의사표시를 기재하여야 함예) 담보제공은 공탁보증보험증권(○○보험증권회사 증권번호 제○○○ ○○○ ○○○호)을 제출하는 방법에 의할 수 있도록 허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가압류신청사건에 대한 담보기준(2003. 10. 20. 접수되는 사건부터 적용)

			or.kull
구 분	부 동 산	채 권	유 체 동 산
담보제공액	청구금액의 1/10 ¹⁾	청구금액의 2/5 ²⁾	청구금액의 4/5 ³⁾
담보제공 방법	현금공탁 또는 보증보험증권 ⁴⁾	○현금공탁 또는 보증보험증권 ⁴⁾ ○다만, 임금, 영업자 예 금의 경우에는 반드시 담보제공액의 1/2 범위 내의 현금공탁 (즉, 청구 금액의 1/5 범위 내의 현금 공탁과 나머지 담보제공액에 관한 보증보험증권) ⁵⁾	구금액의 2/5) 범위 내의 현금공탁과 나머 지 담보제공액에 관한
채권자별 구분 ⁶⁾	없음	없음	없음
선담보 ⁷⁾	가능	가능 (임금, 영업자 예금 제외)	불가능
	소명 정도에 따라 담	채권에 대하여도 소명 정	

도에 따라 담보제공액 중

일정한 부분에 대하여는

현금공탁만을 허용

1) 변동 없음

기타8)

2) 담보제공액 100% 증액(1/5 → 2/5)

보제공액 중 일정한

부분에 대하여는 현

금공탁만을 허용

- 3) 담보제공액 140% 증액(1/3 → 4/5)
- 4) 원칙적으로 현금공탁을 할 것인지 보증보험증권으로 할 것인지의 선택을 채권자 에게 맡김
- 5) 유체동산, 임금, 영업자 예금의 경우 담보제공액의 일정한 비율에 대하여는 현금공 탁만을 담보로 인정함
- 6) 공공기관, 금융기관, 개인 구분을 없앰. 다만, 대한민국에 대하여는 합리적인 담보제공 방법을 찾을 때까지 현행과 같이 무공탁
- 7) 임금, 영업자 예금, 유체동산을 제외하고는 현행과 같이 선담보제공 허용
- 8) 부동산가압류, 임금 및 영업자 예금을 제외한 채권가압류에 대하여는 피보전권리

와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 정도에 따라 담보제공액 중 일정한 부분에 대하여 는 담보로 현금공탁만을 허용

※ 가압류신청 진술서의 제출

새로 제정된 보전처분신청사건의사무처리요령(대법원재판예규 재민 2003-4) 제3조의 규정에 따라 2003. 11. 1.부터 가압류를 신청할 경우에는 별지 가압류신청 진술서를 신청사건 기록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첨부하지 않거나, 고의로 진술 사항을 누락하거나 허위로 진술한 내용이 발견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정명령 없이 기각될 수 있음

●●●분류표시 : 민사집행 >> 가압류, 가처분